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432 |
|----------|-----|

2019년 2월 26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안 일 : 2019년 2월 1일
- 다. 회 부 일 : 2019년 2월 7일
- 라. 상 정 일 :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황인식)

### 가. 제안이유

-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송파-성남-하남에 걸쳐있어 교통, 쓰레기 수거, 주민편익시설(도서관, 문화시설 등) 중복 설치 등 생활불편 사항 다수 발생함.
- 위례신도시 관련 민원은 '18.10월 기준 427,974건으로 '17년 4,297건 대비 약 100배 증가로(국무회의시 위례신도시 민원현황 보고, '18.12.11, 권익위) 중앙부처 및 관련 지자체 간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 나. 주요내용

### 가. 협의회 구성

- 명 칭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 위 원 : 서울특별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 특별위원 : 행안부, 국토부, 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 회 장 :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시장 순으로 윤번제(2년 단위)
- ※ (간사) 회장 지자체 소속 행정협의회 담당 부서장

#### 【 회장 지자체 역할 】

- (회의 소집)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자체 장이 요구할 경우
- (회의 운영) 협의회 안건을 관계 지자체 장에게 미리 배포, 회의록 작성
- (회의 보고)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상황을 행안부장관에게 보고

- 회의운영 :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

※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

- 운영체계 : 분야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검토 후 행정협의회에서 결정

### 나. 행정협의회 사무

-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광역 대중교통 사무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간 위례신도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개요

- 면 적:  $6.753\text{km}^2$  (송파 38%, 성남 41.3%, 하남 20.7%)  
※ 송파  $2.571\text{km}^2$  / 성남  $2.787\text{km}^2$  / 하남  $1.395\text{km}^2$
- 주택계획: 45,257호(송파 16,513호)
- 인 구 수(사업완료시): 111,044명(송파 42,495명)  
※ '18. 9월말 기준 위례동 인구수: 송파 28,738, 성남 43,591, 하남 19,112
- 사업기간: '08. 8월 ~ '20. 12월
- 시 행 자: LH(75%), 서울도시주택공사(25%)

- ※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52조)되어 있는 바, 행정협의회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임.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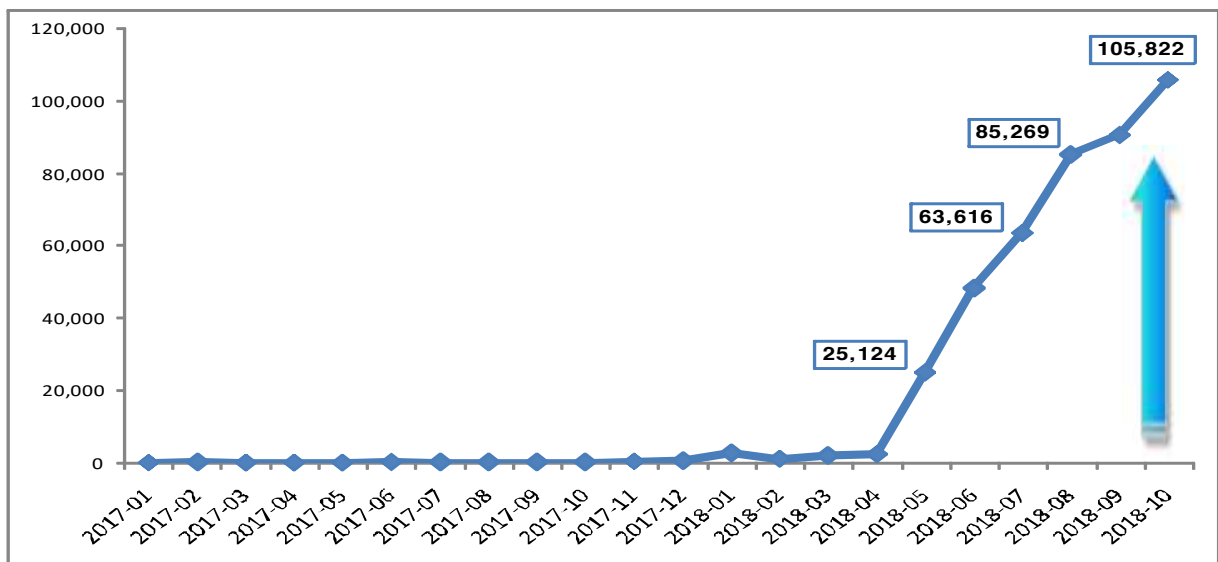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나. 행정협의회 구성 배경 및 필요성

-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서울시(송파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이 상이하여 교통, 쓰레기수거, 주민편익시설 중복 설치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위례신도시 월별 민원 접수 현황(건) 〉



※ 위례신도시 관련 민원은 2018년 10월 기준 427,974건으로 2017년 4,297건 대비 약100배 급증함.

- 도시, 주택, 편의시설 등에 해당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총괄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불편사항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만들고, 주민복지향상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는 자치단체간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바, 사실상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활동에 머무는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부와 내실있고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 행정협의회 조직과 효율성**

- 행정협의회는 조직은 일반위원(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과 특별위원(행안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제3조 및 제4조)으로 구성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공동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협업체계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부처는 행정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의결권 없는 자문역할만으로 국한되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행정협의회는 결정사항에 대해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리한 외연 확대에 의한 조직의 비대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복잡한 협의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행정협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의 윤번제(2년 단위)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위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송파구청장, 하남시장, 성남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행안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직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위원의 관계 직원을 누구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협의회 구성의 위상과 자문 및 의견 수렴 등에 효과적인 구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라. 행정협의회는 경비부담 및 분담금

- 행정협의회 조직 구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협의회 운영과 각종 회의 등을 위해 회비 및 분담금 등을 납부(제12조 및 제13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으로써 납부의 필요성과 명분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행정협의회에 경비부담과 회비 및 분담금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비부담 규모를 정하지 않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바, 부담하여야 하는 예산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백지수표식 예산지출계획으로 예산의 의무부담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주먹구구식 졸속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경비부담과 회비 및 분담금 지출계획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수립하는 등 예산 지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432 |
|----------|-----|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가.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송파-성남-하남에 걸쳐있어 교통, 쓰레기 수거, 주민편익시설(도서관, 문화시설 등) 중복 설치 등 생활불편 사항 다수 발생

나. 위례신도시 관련 민원은 '18.10월 기준 427,974건으로 '17년 4,297건 대비 약 100배 증가로(국무회의시 위례신도시 민원 현황 보고, '18.12.11, 권익위) 중앙부처 및 관련 지자체 간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필요

##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 명 칭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 위 원 : 서울특별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 특별위원 : 행안부, 국토부, 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 회 장 :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시장 순으로 윤번제(2년 단위)

※ (간사) 회장 지자체 소속 행정협의회 담당 부서장

### 【 회장 지자체 역할 】

- (회의 소집)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자체 장이 요구할 경우
- (회의 운영) 협의회 안건을 관계 지자체 장에게 미리 배포, 회의록 작성
- (회의 보고)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상황을 행안부장관에게 보고

○ 회의운영 :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

※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

○ 운영체계 : 분야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검토 후 행정협의회에서 결정

#### 나. 행정협의회 사무

○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광역 대중교통 사무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팀 최충일 (☎ 2133-5804 )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번영을 위하여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3. 서울특별시 송파구
4. 경기도 성남시
5. 경기도 하남시

##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시장 순으로 윤번제(2년단위)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특별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민권익

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 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특별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5조(협의사항) 본 협의회에서는 위례신도시 관련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광역대중교통 사무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4.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개최)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의안 중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 협의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한

다.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규약내용 이행) 본 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규약을 체결한 기관은 본 규약서의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 세부 추진계획 등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2. 본 규약서의 내용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3. 본 규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기관 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0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요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 분쟁조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항
  2.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소속 계속 중인 사항
  3. 분쟁의 원인 또는 목적이 소멸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심의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취지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 단체의 협의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2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간사는 매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분담금의 수입·지출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비 및 분담금) ① 협의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회비와 분담금,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및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실비지원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15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